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4일, 김주영의원 등 1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1.) 상정・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12.)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주영의원)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손을춘)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교육 및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내용

1) 산업재해근로자 관련 기념일 현황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기준으로 19개국[1)]이 산업재해근로자를 추모하는 공식 기념일을 지정했음.[2)]

국내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001년부터 매년 '산재 노동자의 날'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03년부터 모범 산재노동자 장관표창 등을 통해 추모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3)] 및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02호)[4)]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날짜에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

---

1) 캐나다, 미국, 태국, 브라질, 스페인, 대만,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룩셈부르크, 파나마, 버뮤다,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방글라데시 등

2)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에 관한 상세한 유래 및 연혁은 【참고】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4.28.) 유래 및 연혁 참조

3)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4)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제2조(산업안전보건의 날 지정 등)** ①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한다.
②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산업안전보건 대회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제3조(주요행사) ① 산업안전보건의 날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의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의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중앙대회 행사를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연도별로 순회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중 한국산업안전공단, 노·사 단체 및 사업체가 제2항의 행사 외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전시회, 가두캠페인, 각종 경연대회, "산업안전보건인의 밤 등 그 밖의 행사를 유기적·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취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2) 검토의견

개정안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재해자와 2천명이 넘는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이해도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요양재해자수	109,242	108,379	122,713	130,348	136,796
사망자수	2,020	2,062	2,080	2,223	2,016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정부 주관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과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서는 정부의 기념일 지정 요건으로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을 규정하고 있는데,[5] 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국제적인 기념 행사인 '세계 산재근로자 추모의 날'과 그 취지를 같이한다고 볼 것인바 해당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권익 향상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법정기념일 지정은 주관부처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이 필요하고,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

---

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법정기념일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300만원, 2029년 9,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억 6,600만원(연평균 9,3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93	93	93	93	93	466	9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주영)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교육 및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의결

[붙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